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3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이병훈·오영환·김승원

김경만 • 이상직 • 전혜숙

이형석 • 박완주 • 전재수

박재호 · 이용빈 · 노웅래

의원(12인)

제안이유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 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함(안 제5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와 기본방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지원 시책 및 추진계획

- 3.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4(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2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5(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 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정책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
<신 설>	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

책목표와 기본방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지원 시책 및 추진계획
- 3.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4.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
-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 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 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 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신 설>

<신 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 영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제

 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2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

술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5(실태조사)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

<신 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 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 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 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삭 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제>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 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 책
-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 한 사항
-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항
- ②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 된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

②	
<u>정책위원회</u>	또
는 「문화재보호법」	

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 5. (생략)

-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 2. ~ 5. (현행과 같음)